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당시의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현재와 판이했다. 서비스업, IT, 반도체, 전자,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고용형태 역시 대부분 직접고용과 종신고용을 특징으로 했으며 계약직, 단시간, 파견 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 왔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제정 당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81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법이기에 2024년의 변화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대해 무기력한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다.

###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무기력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당시와 달리 서비스업, IT, 반도체, 전자,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직면하는 유해·위험요인은 매우 다양해졌고,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당시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제조업과 건설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직면

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을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 PTSD 등 정신건강 질병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IT, 반도체, 전자 등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해·위험물질, 새로운 유해·위험공정 등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새로운 고용형태에 무기력한 「산업안전보건법」

계약직, 단시간, 파견 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산재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익숙하지 않으며, 안전보건교육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업주들은 이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투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취약성으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한 내용들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게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이다. 「산업

안전보건법」이 변화에 뒤처지는 사이에 법제도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 전통적 고용형태를 유지하던 기업이 새로운 고용형태로 노동자를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로 빠져나갈려고 시도하는 참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

산재예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법제도적 기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산재예방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 노동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이익만을 추구하고 책임은 저버리는 비도덕적인 기업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익에 걸맞은 책임을 기업들에 지울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물질·공정 등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